

'98. 9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제정(안)

김 제 시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98-47
----------	-------

제출년월일 : 1998. 9.

제 출 자 : 김제시장

1. 제정 이유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를 노인의 자립기반 및 복지증진등에 사용함(안 제4조).
- 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안 제9조).

3. 참고 사항

- 노인복지법 제2조·제4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33조
- 지방재정법 제64조·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
- 도 가정65240 - 362('98.3.28)호

김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노인의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에 김제시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계좌를 따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4조의 사업비 지원을 위한 기금집행은 당해년도 기금운용으로 생긴 수입금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 읍·면·동분회 운영 및 수행사업
2.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3.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4.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련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 운용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④위원은 시의원 1인, 노인복지관련 국(과)장 2~3인,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장, 노인복지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자 2~3인으로 하 되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대한노인회김제시지회장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경우에 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관리
2.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3. 기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육성에 관한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구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김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김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산업국장
2. 기금출납원 : 가정복지계장

②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노인복지법 제2조(기본이념)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 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라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4조(복지증진의 책임)①국가와 자치단체는 노인의 복 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자치단체는 노인의 복지에 관한 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 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 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 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지방재정법 제64조(금고의 설치)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시·도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①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기금은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에는 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제115조 및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제15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이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老人福祉法〔1989·12·30〕
〔法律第4178號全文改正〕

改正 1993·12·27 法律第4633號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老人의 心身의 健康維持 및 生活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함으로써 老人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理念) ①老人은 後孫의 養育과 國家 및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여 은 者로서 尊敬받으며, 건전하고 安定된 生活을 보장받는다.

②老人은 그 能力에 따라 적당한 일에 증사하고 社會的 活動에 참여할 機會를 保障받는다.

③老人은 老齡에 따르면 心身의 變化를 自覺하여 항상 心身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知識과 經驗을 活用하여 社會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3條 (家族制度의 유지·발전) 國家와 國民은 敬老孝親의 美風良俗에 따른 健全한 家族制度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4條 (福祉增進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福祉에 관한 施策을 강구함에 있어서 第2條에 規定된 基本理念이 具現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老人의 日常生活에 관련되는 事業을 경영하는 者는 그 事業을 경영함에 있어서 老人의 福祉가 增進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5條 (老人福祉對策委員會) ①老人福祉對策에 관한 國務總理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老人福祉對策委員會를 둔다.

②老人福祉對策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敬老週間)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敬老孝親의 思想을 昂揚하고 老人의 生活向上 意慾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에 敬老週間을 設定하여야 한다.

第7條 (老人福祉相談員) ①老人의 福祉를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區(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市·郡에 老人福祉相談員을 둔

(추 46)

第132條 (經費의 支出) 地方自治團體는 그 自治事務의 수행에 필요한 經費의 委
任된 事務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를 支出할 義務를 진다. 다만, 國家事務 또는
地方自治團體事務를 委任하는 때에는 이를 委任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서
그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第4節 財産 및 公共施設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그
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보유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
金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보유,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
한다. <改正 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
를 말한다.

第134條 (財産의 管理 및 處分) 地方自治團體의 財産은 法令 또는 條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交換·讓與·貸與하거나 出資 또는 支給의 手段으로 사용할 수
없다.

第135條 (公共施設)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를 增進하기 위하여 公共施設
을 設置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에 관하여 다른 法令에 規定이 없는 경우에
는 條例로 정한다.

③第1項의 公共施設은 關係地方自治團體의 同意를 얻어 그 地方自治團體의 區
域밖에 設置할 수 있다.

第5節 補則

第136條 (地方財政運營에 관한 法律의 制定)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에 관하여 이
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7條 (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 ①地方自治團體는 住民의 福祉增進과 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地方公企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地方公企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

第138條 削除 <94·3·16>

第8章 地方自治團體 상호간의 關係

權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하거나 당해 地方自治團體에 不利하게 效力을 變更할 수 없다.

第108條 (管理의 방법등) ①債權의 管理에 관한 事務는 債權의 發生원인 또는 내용에 따라 地方自治團體의 이익에 가장 적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債權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債務者·債權金額 및 履行期限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帳簿에 기재하고, 그 管理의 徹底를 기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債務의 管理에 관하여도 이를 準用한다.

第4節 公共施設 및 基金

第109條 (公共施設의 設置 및 管理) ①地方自治法 第13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公共施設을 設置함에 있어서 그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補助받아야 할 公共施設에 관한 條例는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거쳐 地方議會의 議決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內務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승인에 앞서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公共施設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하여 그 公共施設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10條 (基金의 運用등) ①地方自治法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는 基金은 條例로 정하는 특별한 目的을 위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運用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을 目的으로 하는 基金의 경우에는 그 基金의 造成을 위하여 地方債를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1·12·31>

③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會計年度마다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며, 出納閉鎖후 3月 이내에 基金의 決算報告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運用計劃書와 基金決算報告書를 每 會計年度마다 각각 歲入·歲出豫算案 또는 決算書와 함께 地方議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⑤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의 관리와 运用到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公務員에게 위임하거나 地方自治團體의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委託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者의 책임에 관하여는 第

115條 및 會計關係職員 등의 責任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新設 94·12·22>

第11章 會計關係公務員

第111條 (出納員) ①出納員은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이 소속 公務員 중에서 任命한다.

②出納員은 法令·條例 및 規則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現金 또는 物品을 出納·보관하여야 한다.

③出納員은 收入金出納員·日常經費出納員·歲入歲出外現金出納員 및 物品出納員 등으로 나눈다. <改正 91·12·31>

第112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 또는 委任) 徵收官·經理官·財產管理官·物品管理官·債權管理官·債務管理官·支出員 또는 出納員과 그 代理者·分任者 등 (이하 “會計關係公務員”이라 한다)의 任命 또는 委任은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第113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代理와 分任)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그 委任을 받은 公務員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會計關係公務員의 事務의 全部를 代理하거나 그 일부를 分掌하는 公務員을 任命 또는 委任할 수 있다.

第114條 (會計關係公務員의 任命特例)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事務遂行上 필요한 경우에 國家機關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公務員을 當해 所屬機關의 長의 同意를 얻어 會計關係公務員으로 任命할 수 있다. <改正 94·12·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會計關係公務員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며, 會計에 관한 法令중 當해 事務의 취급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15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責任) ①會計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行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物品을 사용하는 公務員이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사용중인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함으로써 그 地方自治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도 또한 같다.

②出納員과 그 出納事務를 代理 또는 分任하는 者가 그 보관에 속하는 現金 또는 物品을 亡失하거나 훼손한 경우에 善良한 管理者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證明을 하지 못한 때에는 辨償의 責任을 진다.

第116條 (會計關係公務員의 財政保證) 會計關係公務員은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 財政保證이 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추 56)

3. 담보부채권에 있어서 담보의 가액이 감소되거나 보증인이 부적당하게 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채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담보의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변경을 하는 것
4.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상황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5. 채무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것

②용도가 특정된 대부금채권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외에 다음 사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기한내에 대부금을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2. 채무자가 대부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기전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절 공공시설 및 기금

제15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개정 93·9·23>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3·9·23>

③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0장 회계관계공무원

제157조 (출납원의 장부등의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회계연도말 또는 출납원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검사원을 명하여 당해 출납원 소관의 장부·보관용기 또는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58조 (지방자치단체회계의 국가공무원에 의한 취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추 41)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제 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예탁금제정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⑤지출원은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매월말 현재의 지출액에 대해서 다음달 15일까지 대체수표를 발행하되, 세입으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3절 대 체 수 지

제71조(대체수지의 범위)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 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시와 시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 개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특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72조의 수지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자금운용) ①시장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6. 2. 8 규칙87>

(추2)

-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입세출외현금

제7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 1. 보증금
- 2. 보관금
- 3. 잡종금 등 기타

제76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시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시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시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서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동조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

(추2)